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99
----------	-----

제출년월일 : 2016. 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위원 구성 및 임기(안 제2조 및 안 제4조)

- 위원장 군수
-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한차례 연임

다.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안 제3조)

라. 위원장 의 직무 및 회의 운영 (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 9. 23. ~ 10.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실시 : 원안동의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시행령(제2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2. 영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것과 위원장이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 출석위원 직·성명, 심의안건·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8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조례 제5조(경비 지원)

-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연락처	(033) 330 - 2150

관 련 법 령 발 취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 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 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